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공매도 전산화 방안

2024. 6.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목 차

I. 그간의 경과	1
II.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 기준 마련	2
III.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 구축	7
IV. 향후 추진 계획	10
[붙임1]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운영 구조	11
[붙임2]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	12
[붙임3] 공매도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14
[붙임4] 공매도 주문 위탁자 점검 체크리스트	18
[붙임5]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 운영 구조	21

I. 그간의 경과

- (추진방향) '23.11.16. 유관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安)」에서 공매도 전산화 추진 방향을 마련
 - 공매도 거래 기관투자자의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 하고 중앙 시스템 도입방안을 추가 검토

- (진행경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산화TF*를 '23.11월 발족하고 22회 실무협의, 3회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전산화 방안 확정
 - * 금감원, 거래소, 유관기관, 국내증권사 2사, 외국증권사 2사, 자산운용사 2사 참여
 - ① (과거 실패사례 분석) 舊 시스템 구축안을 설계한 코스콤 등 유관기관들과 3회 실무협의 등을 거쳐 舊 시스템의 폐기 원인 파악
 - ② (사전검토) 전산 시스템 구축 대상 101개 기관투자자를 4개 그룹*으로 구분, 잔고관리 시스템 운영 실태, 타 시스템과 연계 가능성 검토
 - * 외국인, 증권사, 공모운용사, 사모운용사
 - ③ (다양한 방안 도출) 실시간 차단, 대차거래 전산화, 사후 모니터링 등 총 5개 방안을 마련하고 각각의 장단점 분석
 - 실시간 차단시 거래 지연속도 추산(코스콤), 각각의 시스템별 투자 형태 변화 등 증시 영향 통계적 분석 등 실시
 - ④ (현실타당성 검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과 중앙점검 시스템을 연계할 외국인 등 기관투자자와 8회의 심도있는 협의 실시
 - ⑤ (유관기관 실무논의) 금융위, 거래소 등 중앙점검 시스템 도입·설치 관련 유관기관과 5회에 걸쳐 구축방안 협의
 - ⑥ (공론화) 3회에 걸쳐(3.13., 4.25., 6.10.)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기관 및 외국인을 상대로 전산화 방안을 설명하고 의견 청취
 - ※ 글로벌IB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한 홍콩 현지 공매도 간담회(5.16.)도 실시

II.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 기준 마련

주요 구축계획

◆ 기관이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및 내부통제 기준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는 방안으로 '24.4분기까지 구축 추진

- ① 잔고 변동내역을 실시간 집계하는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 ② 공매도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1. 적용대상

- (① 적용대상) 대규모 공매도 거래(공매도 잔고 0.01% 또는 10억원 이상)를 하거나 MM(시장조성자)·LP(유동성 공급자) 증권사인 기관투자자
 - '23년 기준 대규모 공매도 거래자는 99개사(외사 21개, 국내사 78개), MM·LP 증권사는 27개사로 중복 제거시 총 101개*사
 - * '23년 기준 공매도 전체 거래량의 92%+α 차지
 - 다만, 거래 유형상 무차입공매도 가능성이 낮은 경우 및 소규모 공매도 거래만을 서약한 기존 대규모 공매도 거래자는 시스템 구축 면제

무차입공매도 거래 가능성이 낮은 경우	기존 대규모 공매도 거래자 경과조치
① 공매도 거래중단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② 차입 주식 계좌 입고 후에만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경우	① 공매도 매도 잔고 0.01% 및 10억원 미만 유지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 (② 적용대상) 공매도 거래 모든 법인에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부과
 - 다만, 무차입공매도 발생 가능성이 낮은 거래유형*으로만 공매도 거래를 하는 법인에는 약식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부과
 - * 차입 주식 계좌 입고 후에만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경우

공매도를 거래하는 모든 법인투자자	거래 유형상 무차입공매도 거래 가능성이 낮은 법인
일반적인 내부통제 기준	약식 내부통제 기준

2.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 (Concept)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매도 가능 잔고 등을 관리하는 기관내 전산 시스템 구축

○ 투자자 보유 공유재원*(Pool)을 통합관리하고 초과매도 등 결제 불이행 위험을 사전에 감지, 매도주문을 통제하는 시스템

* 독립거래단위 등을 합산한 회사 전체의 보유잔고 및 대차잔고

□ (시스템 운영) 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내부 전산을 통해 매매 프로세스 전 과정에서 무차입공매도를 사전 차단

○ (1) 매매내역을 실시간 반영하여 과매도 거부, (2) 차입 승인 전 공매도 거부, (3) 대차처래 등을 실시간 반영하여 과매도 거부

< 무차입공매도 차단 Process >



※ <붙임 1>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운영 구조

□ (시스템 필수 요구사항) 매도가능잔고(보유+차입-상환+기타관리) 실시간 산출 및 무차입공매도 사전차단을 위한 통제장치를 시스템에 반영

<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주요 요구사항 >

요구사항	기대효과
① 공매도 가능 여부 판단이 필요한 모든 계산 단위별로 보유한 모든 주식의 매도가능잔고 실시간 산출	- 무차입공매도 사전 차단
② 매도가능잔고 초과 주문 실시간 차단	
③ 차입 상환 및 장외입출고 등으로 인한 보유 수량 변화 실시간 반영	
④ 매도가능잔고 부족시 알림통보 및 부족 수량 보충 강제	
⑤ 수기로 수량 변경시 상급자 승인 절차 등 통제장치 마련	- 잔고 오류 과매도 방지
⑥ 대차거래 상세 증빙 등 기록·관리	- 사후 조작 방지

※ <붙임 2>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

3. 내부통제 기준

- (Concept)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오류 방지 및 기관내 잔고 관리 시스템 미구축 법인의 무차입공매도 발생 방지
- (내부통제 기본 원칙) 공매도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부서 책임 하에 무차입 공매도 발생 예방을 위한 상시감시 실시
 - 공매도 관련 거래 상세내역을 5년간 보관하고 금감원 검사·조사 목적 요구 시 자료제출
- (내부통제 세부 내용) 법인의 공매도 거래규모 및 무차입공매도 발생 가능성에 따라 맞춤형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를 부과
 - ※ <붙임3> 「공매도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참고

가.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운영 기관투자자의 내부통제 기준

- (관리 부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관리 부서를 지정하고 무차입 공매도 발생 여부 등을 상시 모니터링
- (시스템 통제) 권한 없는 자의 시스템 접근권한을 통제하고 시스템 오류 발생시 공매도 주문 차단 등 비상상황에 대처
- (점검) 공매도 주문 부서의 자체 1일 점검 및 감사부서 등 제3의 부서의 수시·정기 점검을 통한 잔고 오류 방지
- (자체 조치)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 발생시 자체 징계 및 내부통제 개선 등 수행 후 금감원 및 수탁증권사에 보고
- (자료 보관) 5년간 내부통제 활동 관련 기록·보관 및 검사·조사 요구시 자료제출 협조

구 분	주요 내용
관리 부서 지정	공매도 거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시스템 관리 부서 등을 지정
시스템 통제	권한없는 자의 시스템 접근권 제한 등
	시스템 오류 발생시 모든 공매도 주문 의무 차단
점 검	
1일 점검	매 영업일 마감 후 시스템 잔고의 정확성 검증
수시·정기 점검	점검주기, 점검방법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및 점검
자체 조치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자는 자체 징계 및 관련 내용을 금감원 및 수탁증권사에 보고
자료 보관	내부통제 활동 관련 기록을 5년간 보관하고 금감원 요청시 제출

나. 시스템 구축 의무 면제 공매도 거래 법인의 내부통제 기준

- (원칙) 관리 부서 지정, 자체 점검·조치, 자료 보관 등 내부통제의 기본 골격은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법인과 동일
- (예외) 잔고관리 시스템이 아닌 공매도 관련 업무 규칙을 통해 무차입공매도 발생을 예방
 - 공매도 주문 전 법규준수 여부 사전 검토 및 상급자 승인 절차, 주문 전 매도가능잔고 산출 및 대차 관련 상세 정보 기록 보관 등

구 분	주요 내용
관리 부서 지정	잔고관리 시스템 운영 기관투자자 적용기준과 동일
업무 규칙	공매도 주문 제출 전 법규 준수 여부 검토, 주문 정보 기록·관리, 매도가능잔고 산출 및 잔고 초과 주문 방지 등 11개 규칙
점 검	잔고관리 시스템 운영 기관투자자 적용기준과 동일
자체 조치	
자료 보관	

다. 무차입공매도 발생 가능성이 낮은 거래유형 취급 법인

- (원칙) 관리 부서 지정, 자체 점검·조치, 자료 보관 등 내부통제의 기본 골격은 시스템 구축 의무 면제 법인과 동일한 기준
- (적용 면제) 무차입 공매도 발생 가능성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주문 전 매도가능잔고 산출, 대차거래 상세 정보 관리 등 업무 규칙 일부 적용을 면제

구 분	주요 내용
약식 업무 규칙	관리 부서 지정, 점검의무, 자체 조치 및 자료보관 의무는 동일 업무 규칙상 주문 전 실시간 매도가능잔고 산출, 대차거래 상세 정보 관리 등 관련 8개 기준의 적용을 면제

4. 수탁 증권사 점검

- (Concept) 자율적으로 구축·운영되던 기관투자자의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과 관련 내부통제기준 관련 외부검증 실시
- (점검 대상 및 방식)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모든 법인투자자
 - 수탁 증권사는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 필수 요구사항이 반영되었는지 여부 및 내부통제기준 세부내용의 자체 내규화 여부 등 확인
 -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운영의 적절성 검증을 위해 샘플링 조사도 병행
 - 법인투자자는 증권사 점검 요구시 증권사에 관련자료 제출 의무
 - ※ <붙임 4> 공매도 주문 위탁자 점검 체크리스트
- (점검 주기) 수탁 증권사는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최초 수탁받기 전 점검을 실시, 최초 점검 이후에도 최소 연 1회 이상의 정기점검

III.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 구축

주요 구축계획

◆ 한국거래소가 모든 매도주문의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상시 조기 탐지하는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25.3월까지 구축 추진

- ① 기관투자자의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투자자별 잔고, 장내·외거래 내역을 신속 집계하는 NSDS 구축
- ② NSDS는 ⁽¹⁾ 무차입공매도를 상시 조기 탐지하고 ⁽²⁾ 환류 체계를 통해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고도화 촉진

- (적용대상)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의무 구축 대상인 대규모 공매도 거래 기관투자자 및 MM·LP 증권사
- (Concept) 기관투자자의 잔고 변동내역을 중앙시스템에서 신속 (T+2일 이내)하게 집계하여 무차입공매도를 조기 탐지(T+3일 이내)
 - 투자자별 일별 마감잔고를 독립적으로 산출하고 투자자 잔고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유효성을 점검
- (시스템 운영) 시간별(timeline) 매도가능잔고를 산출하고 이를 모든 매도주문과 상시 대사하여 무차입공매도를 자동 탐지 및 신속 제재
 - 기관투자자 등은 독립거래 단위별로 모든 종목의 잔고 및 장외 거래내역을 2일 內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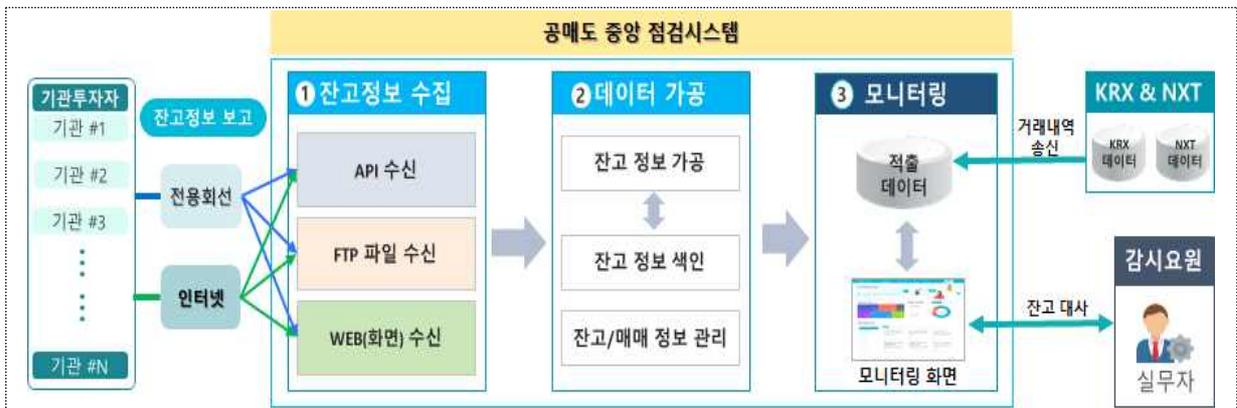
<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 세부 구축·운영 내용 >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자료 전송 → ← 미비점 피드백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	
보고 단위	- (원칙) 독립거래 단위 - (예외) 공매도 잔고 산정 등을 법인 단위로 산정시 법인		탐지 단위	- (원칙) 독립거래 단위 - (예외) 법인 단위
보고 시한	- 잔고 및 장외거래내역 T+2일 內 전송	탐지 시한	- 무차입공매도 T+3일 內 적발	
보고 대상	- 투자자가 거래, 보유중인 모든 종목	탐지 대상	- 모든 매도거래의 무차입 여부 검증(공매도 표시 여부 무관)	

※ <붙임 5>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 운영 구조

- NSDS는 3개 단위 시스템(정보 수집, 데이터 가공, 모니터링)을 통해 모든 유형의 매도주문을 3일 내 검증하여 무차입공매도를 적발
 - 또한, 독립적 잔고 산출 기능을 통해 투자자 잔고 오류에 대한 상시 피드백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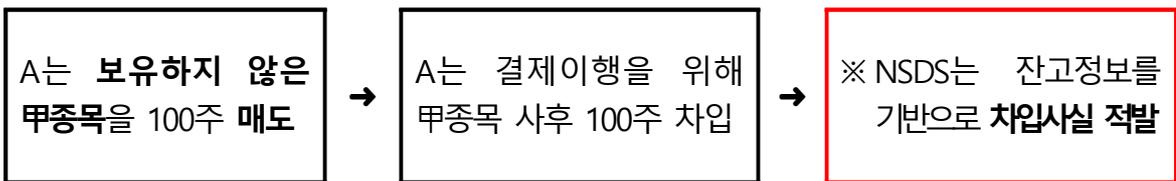
<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 구성도 >



□ (기대효과) 무차입공매도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 혐의 거래를 신속하게 탐지하여 신속 제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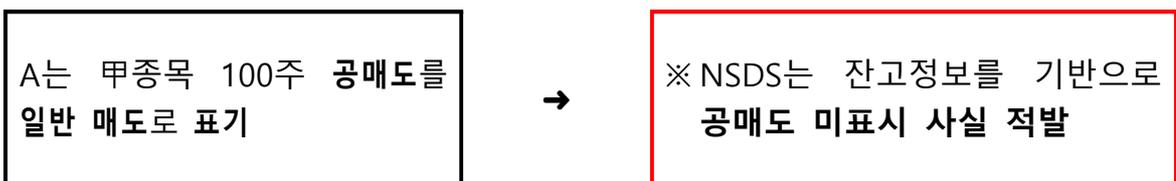
- (무차입공매도 사각지대 해소) 2가지 불법 유형을 손쉽게 적발

① (결제이행 무차입공매도) 그간 적발이 어려웠던 정상 결제 무차입 공매도 자동 적발



② (업틱를 우회거래) 투자자가 업틱를* 적용 회피 목적으로 공매도 주문을 일반 매도주문으로 표기한 경우 적발

* (Up-Tick Rule) 주식 공매도시 매도 호가를 직전 거래가격 이상으로 제시하는 제도



- (적발 범위·속도↑) 공매도 표시 주문 뿐만 아니라 일반 매도주문의 무차입 여부도 신속 검증하여 무차입공매도 적발

구 분	現 조사 Process	개선 後 조사 Process
조사대상	공매도 표시 주문 위주	모든 매도주문
조사범위	공매도 잔고가 급증하거나 T+2까지 주식이 미입고된 거래	'상 동'
무차입공매도 판단	금감원이 투자자로부터 자료를 징구하여 무차입 여부 판별	잔고 초과 매도주문 결제 직후 무차입 여부 자동 판별

- (환류 체계를 통한 시스템 고도화) NSDS의 잔고 오류 피드백과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보고 정보의 신뢰성 향상이 계속 반복
 - 두 시스템이 상보적 관계로 함께 고도화되어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무차입공매도 예방 효과 달성

□ (시스템 구축일정) NSDS 조기 가동을 위해 거래소는 즉시 개발에 착수('24.6월)하여 10개월 內 구축을 완료('24.6월~'25.3월)

< NSDS 개발 소요 기간 >

구 분	세부사항	소요 기간
사전 행정 작업	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0.5개월
	전산.리스크관리위원회	1.5개월
	보안성 검토(거래소→금융위→국정원)	
	구축방안 확정	
	계약 체결	계약의뢰 및 입찰공고
기술평가위원회 및 계약체결		
본개발	인프라 구축 및 시스템 개발	5개월
	테스트 및 이행 준비	2개월
소요 기간		10개월

IV. 향후 추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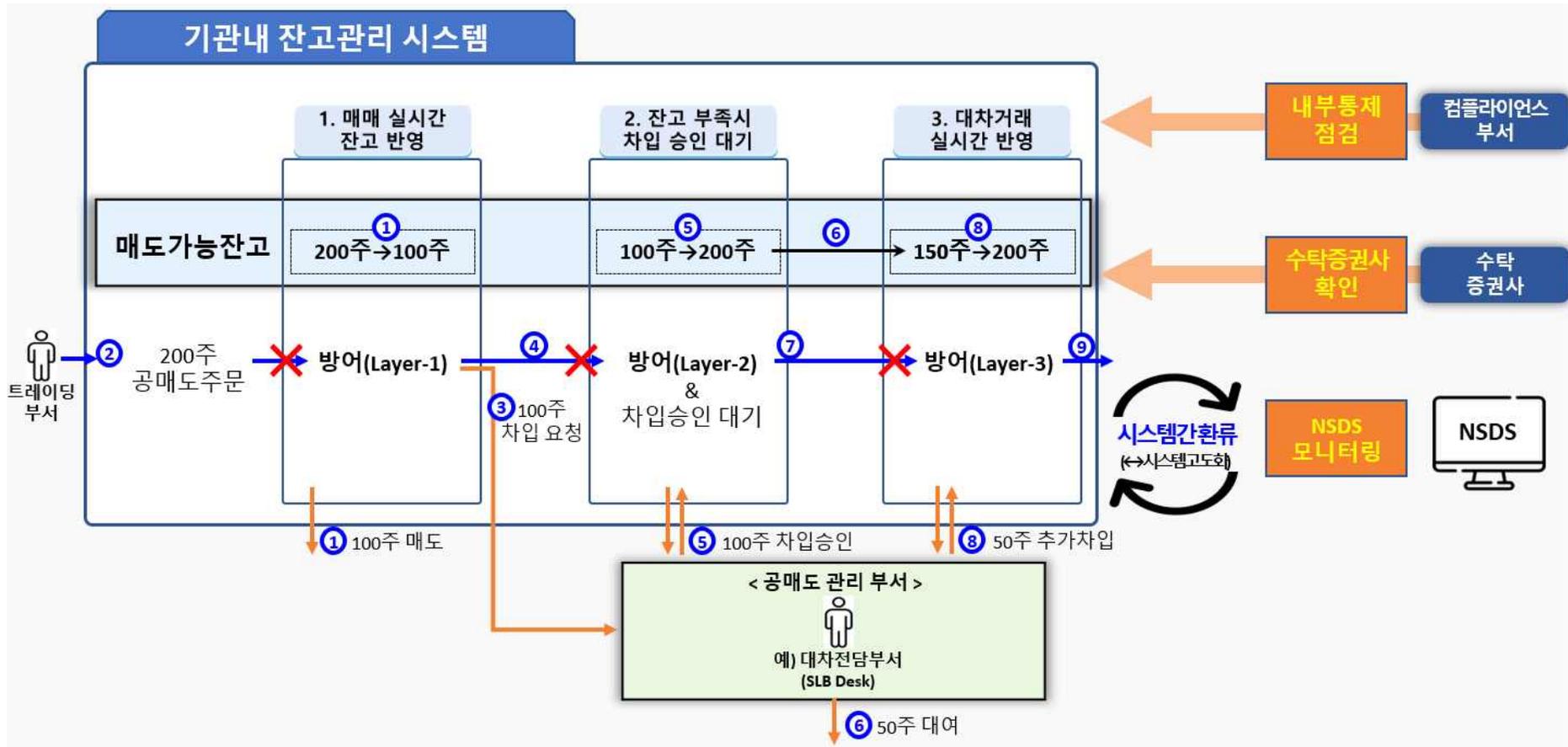
- ① (가이드라인 제정(안) 조기 공개, 6월) 공매도 거래 기관투자자의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및 내부통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6.13. 대외 발표(행정지도 사전예고)
 - 외국인(21사)의 관련 제도 이해도 제고를 위해 영문 가이드라인 동시 제공
- ② (가이드라인 제정(안) 확정, 8월*)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의 의견수렴 후 가이드라인 최종안 확정
 - * 우리원 행정지도에 해당되어 사전예고 및 행정지도 심의위 심의 등 절차를 거쳐 확정
- ③ (법제화, 법 개정 후 3개월 이내) 자본시장법에 공매도 거래 기관투자자의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의무가 마련되면,
 -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을 규정 및 세칙에 반영
- ④ (신속 행정지원, 6월~)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및 내부통제의 조기 안착을 위한 신속 행정지원 체계 가동
 -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지원) 담당 회사별 가이드라인 안내 등을 통한 시스템 조기 도입 유도
 - (내부통제 지원) 기관투자자의 금융 관련 법규 등 전문성을 제고 시켜 내부통제 조기 마련 유도

〈 신속 행정지원 체계 〉

구 분	내 용
인 력	11명(금감원 5명, 거래소 3명, 협회 3명)
구 성	2반(시스템 도입 지원반, 내부통제 지원반) ① 시스템 도입 지원반 : 7명(금감원 3명, 거래소 3명, 협회 1명) ② 내부통제 지원반 : 4명(금감원 2명, 협회 2명)
기 능	① 시스템 도입 지원반 : 전산 시스템 도입 등 지원 ② 내부통제 지원반 : 내부통제 도입, 수탁 증권사 확인의무 설정 등 지원

붙임1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운영 구조



- ▶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 발생 예방을 위해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을 안내해 드리오니, 본 내용을 참고하여 각 사의 상황에 맞도록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공매도 거래주문을 제출하는 자(이하 '공매도 거래자')의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이하 '시스템')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여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적인 거래주문 제출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가이드라인은 '23.1.1. 이후 공매도 잔고가 1회라도 0.01%를 초과 또는 10억원 이상이었던 법인과 향후 예정인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1. 공매도 거래중단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2. 공매도 잔고 0.01%, 10억원 미만 유지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3. 증권사 계좌에 차입한 주식을 입고한 후에만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경우

제3조(시스템 요구사항) ① 시스템은 보유한 모든 주식 종목별로 순보유잔고, 차입잔고, 매도가능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출 가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매도가능잔고는 순보유잔고와 차입잔고의 합으로 계산하되 회사별 특성(예: 차입주식 상환 예정분을 미리 차감하여 보수적으로 운영)을 반영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③ 순보유잔고, 차입잔고, 매도가능잔고 산출은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해 공매도 가능 여부 판단이 필요한 계산 단위(법인단위, 독립거래 단위 등 이하 이 조에서 '계산 단위')를 모두 포함하여 각각 산출 가능하여야 한다.

- ④ 시스템은 장 시작 전에 계산 단위별로 당일 최초 매도가능잔고(SOD) 수량의 계산을 완료하고, 장 시작 후 매매 주문 및 체결 내역 등을 반영하여 매도가능잔고 수량을 실시간 산출 가능하여야 한다.
- ⑤ 시스템은 계산 단위별로 매도가능잔고 수량 부족시 대차전담 부서 등 공매도 업무 관련 관리 부서에 경고 알림을 보내고, 매도 부족 수량을 보충하도록 강제하여야 한다.
- ⑥ 시스템은 차입, 상환 및 장외입출고 등으로 인한 보유 수량의 변화를 매도가능잔고에 실시간 반영하여야 하며, 수기로 반영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이 해당 수량 변경 사유를 인지한 직후 최대한 신속히 반영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업무 매뉴얼 등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⑦ 시스템은 계산 단위별로 매도가능잔고를 초과하는 매도 주문을 실시간 차단하여야 한다.
- ⑧ 시스템은 대차거래의 상대방, 계약체결 일시, 종목 및 수량 등 차입 공매도 주문 제출 이전에 대차거래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상세 정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⑨ 시스템은 매도가능잔고의 수량이 전자적인 방식으로 자동 변경되는 경우가 아닌 사람에 의해 직접 변경(예: 수기 대차거래, 유·무상 증자 등의 이벤트 반영)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확인 절차(예: 상급자 승인 절차) 등 오류방지를 위한 통제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⑩ 시스템은 매도가능잔고 및 외부 대차정보 등 무차입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산출하여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 발생 예방을 위해 공매도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안내해 드리오니, 본 내용을 참고하여 각 사의 상황에 맞도록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공매도 거래주문을 제출하려는 자(이하 '공매도 거래자')가 갖추어야 하는 공매도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적인 거래주문 제출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가이드라인은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차입공매도 하려는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단, 증권사 계좌에 차입한 주식을 입고한 후에만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제4조의2, 제8조, 제9조, 제10조를 제외한 본 가이드라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업무 분장) ① 공매도 거래자는 대차거래 및 공매도 거래주문 제출 등 공매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공매도 거래자는 컴플라이언스, 대차전담 부서 등 공매도 매매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단위의 공매도 관리 부서 등(이하 '관리 부서 등')을 지정하여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적인 거래주문이 제출되지 않도록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공매도 업무 규칙) ① 공매도 거래자는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적인 거래주문 방지를 위하여 대차거래정보 및 순보유잔고 관리 등 공매도 관련 업무에 대한 업무 규칙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단,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업무 규칙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의 업무 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매도 주문 제출 전 거래 필요성, 가격 적정성,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해 사전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공매도 주문 제출 시 매 건마다 해당 임직원의 정보, 계약체결 일시, 종목 및 수량, 거래사유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 주식 종목별로 매 거래 주문 제출 전·후 순보유잔고, 차입잔고, 매도 가능잔고를 산출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매도가능잔고는 순보유잔고와 차입잔고의 합으로 계산하되

회사별 특성(예: 차입주식 상환 예정분을 미리 차감하여 보수적으로 운영)을 반영하여 계산할 수 있다.

5. 제3호의 순보유잔고, 차입잔고, 매도가능잔고 산출은 공매도 가능 여부 판단이 필요한 계산 단위(법인단위, 독립거래단위 등 이하 '계산 단위')를 모두 포함하여 각각 산출 하여야 한다.
6. 계산 단위별로 매 공매도 거래주문 제출 전 매도가능잔고의 수량을 확인하고, 부족시 차입 등을 통해 확보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7. 차입, 상환 및 장외입출고 등으로 인한 보유 수량의 변화를 인지한 후 매도가능잔고에 최대한 신속히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업무 매뉴얼 등 일관된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8. 계산 단위별로 매도가능잔고를 초과하는 매도 주문을 차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매도 주문 전 상급자 승인 절차 등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9. 대차거래의 상대방, 계약체결 일시, 종목 및 수량 등 차입공매도 주문 제출 이전에 대차거래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상세 정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0. 장내거래 이외의 사유로 매도가능잔고의 수량 변경시 오류 방지를 위해 상급자 승인 절차 등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1. 익일 정규 거래소 또는 대체거래소 거래 시작 전까지 잔고의 정확성과 공매도 주문 제출건의 법규 준수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제4조의2(약식 업무 규칙) 공매도 거래자는 제2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 규칙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공매도 주문 제출 전 거래 필요성, 가격 적정성,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해 사전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공매도 주문 제출 시 매 건마다 해당 임직원의 정보, 계약체결 일시, 종목 및 수량, 거래사유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 익일 정규 거래소 또는 대체거래소 거래 시작 전까지 잔고의 정확성과 공매도 주문 제출건의 법규 준수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제5조(공매도 고유번호) ① 공매도 거래자는 제4조 제1항 단서의 기관내 잔고 관리 시스템 구축 의무 대상인 경우 공매도 고유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공매도 고유번호는 모든 매매 주문 제출시 및 무차입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에 자료 보고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운영) ① 공매도 거래자는 제4조 제1항 단서의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스템의 사용 및 수정 권한 등은 관리 부서 등이 승인 절차를 통해 부여하고 권한이 없는 임직원은 사용 불가하도록 제한하여야 한다.
2. 시스템이 차단한 매도 주문을 단순 예외 승인할 수 없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3. 공매도 관련 법규 및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 등을 최신 상태로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관리 부서 등은 익일 정규 거래소 또는 대체거래소 거래 시작 전까지 시스템 잔고의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5. 관리 부서 등은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및 데이터(잔고정보 등)의 변경·삭제 등 운영 내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검증내용의 정확성에 대해 사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와 승인내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6.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검증과정 등에서 매도가능잔고 산출 오류 등 무차입 공매도 발생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그 즉시 해당 종목의 공매도 거래를 중단하고 오류 사항을 시정하여야 하며 매도가능잔고 산출의 적정성이 확인된 이후에만 공매도 거래를 재개하여야 한다.

제7조(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 대한 수탁 증권사 확인) ① 공매도 거래자는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마련한 공매도 내부통제 절차와 관련된 내규 등을 공매도 주문 수탁 증권사에 확인받은 이후부터 수탁 증권사에 공매도 주문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공매도 거래자는 제4조 제1항 단서의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의무 대상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매도 거래자는 공매도 주문 수탁 증권사로부터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확인을 받은 이후부터 수탁 증권사에 공매도 주문을 위탁할 수 있고, 최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탁 증권사로부터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받고 확인 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2. 수탁 증권사는 제1호의 공매도 거래자 기관내 잔고관리시스템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시스템 운영에 관한 자료를 공매도 거래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공매도 거래자는 수탁 증권사에 신속,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탁 증권사가 현장 검증을 요구하는 경우 공매도 거래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모니터링) ① 공매도 거래자는 이 가이드라인 및 공매도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해당 업무처리 부서 및 관리 부서 등이 아닌 감사 부서 등 제3의 부서가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점검주기(상시, 정기), 점검방법, 샘플 선정기준, 소관부서 등 구체적인 점검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모니터링 담당 부서는 이 가이드라인 및 공매도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공매도 주문을 중단하고, 관련 위반 사항을 경영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공매도 거래자는 임직원의 내부통제 및 공매도 관련 법규 준수 위반 행위를 발견한 경우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대한 제재, 내부통제제도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내부통제 위반 행위 및 관련 조치 내용을 수탁 증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공매도 관련 법규 준수 위반 행위 및 관련 조치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의 보관) 공매도 거래자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른 내부통제 활동에 대해 세부 내역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검사·조사시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붙임4

공매도 주문 위탁자 점검 체크리스트

위탁업체명	공매도 등록번호	위탁기간	위탁업무 내용	주문전달방법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주)○○	240000001	2024.6.1.~	공매도 주문 위탁	DMA	대차중개팀	김○○ (02-000-0000)

구분		점검 내용	점검결과 (Y/N)	
1	내부통제	- 공매도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였는지 - 증빙자료 : 공매도 내부통제 절차 관련 내규 등		
2	업무 분장	- 대차거래 및 공매도 거래주문 제출 등 공매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지 - 증빙자료 : 업무분장표 등		
3		- 공매도 관리 부서 등을 지정하여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적인 거래주문이 제출되지 않도록 내부통제 및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관리하도록 하고 있는지 - 증빙자료 : 조직도, 직제규정 등		
4	기관내 잔 고 관 리 시스템	- 시스템의 사용 및 수정 권한 등을 관리 부서 등이 승인 절차를 통해 부여하고, 권한이 없는 임직원은 사용 불가하도록 제한하고 있는지 - 증빙자료 : 시스템 사용 및 수정 권한 부여내역, 시스템 사용 내역 등		
5		- 시스템이 차단한 매도 주문을 단순 예외 승인할 수 없도록 통제 하고 있는지 - 증빙자료 : 시스템이 차단한 매도 내역 중 실제 주문 제출 내역 등		
6		- 공매도 관련 법규 및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 등을 최신 상태로 시스템에 반영하였는지 - 증빙자료 : 가이드라인 변경에 대한 시스템 수정 내역 등		
7		- 관리 부서 등이 익일 정규 거래소 또는 대체거래소 거래 시작 전까지 시스템 잔고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있는지 - 증빙자료 : 시스템 잔고 정확성 검증 내역		
8		- 관리 부서 등이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및 데이터(잔고정보 등)의 변경·삭제 등 운영 내역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검증내용의 정확성에 대해 사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와 승인내역을 기록·보관하고 있는지 - 증빙자료 : 시스템 운용 내역, 변경 승인내역 등		
9		- 보유한 모든 주식 종목별로 순보유잔고, 차입잔고, 매도가능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출하고 있는지 - 증빙자료 : 실시간 산출 화면 및 DB 캡처 등		
10		시스템 요구 사항	- 순보유잔고, 차입잔고, 매도가능잔고를 공매도 가능 여부 판단이 필요한 모든 계산 단위(법인단위, 독립거래단위 등) 별로 각각 산출 하고 있는지 - 증빙자료 : 계산 단위별 산출 화면 및 DB 캡처 등	

구분		점검 내용	점검결과 (Y/N)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시작 전 계산 단위별 당일 최초 매도가능잔고(SOD) 산출 및 장 시작 후 매매 체결 내역 등을 반영하여 매도가능잔고 수량을 실시간 산출하고 있는지 - 증빙자료 : 매매 체결 내역 반영한 매도가능잔고 산출 화면 및 DB 캡처 등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산 단위별로 매도가능잔고 수량 부족시 대차전담 부서 등 공매도 업무 관련 관리 부서에 경고 알림을 보내고, 매도 부족 수량을 보충하도록 강제하고 있는지 - 증빙자료 : 수량 부족시 관리 부서 알림 내역 등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입, 상환 및 장외입출고 등으로 인한 보유 수량의 변화를 매도 가능잔고에 실시간 반영하고 있으며, 수기로 반영해야 하는 경우 임직원이 해당 수량 변경 사유를 인지한 직후 최대한 신속히 반영하고, 이를 위한 업무 매뉴얼 등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 증빙자료 : 차입 등으로 인한 보유 수량 변화의 실시간 반영 내역 화면 및 DB 캡처, 수기 반영 케이스 샘플 캡처, 관련 업무 매뉴얼 등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산 단위별로 매도가능잔고를 초과하는 매도 주문을 실시간 차단하고 있는지 - 증빙자료 : 계산 단위별 잔고 초과 매도 주문 차단 내역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차거래의 상대방, 계약체결 일시, 종목 및 수량 등 차입공매도 주문 제출 이전에 대차거래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상세 정보를 5년간 기록·관리하고 있는지 - 증빙자료 : 대차거래 성립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메신저 캡처, 대차거래 증빙 보관 내역 등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도가능잔고의 수량이 전자적인 방식으로 자동 변경되는 경우가 아닌 사람에 의해 직접 변경(예 : 수기 대차거래, 유·무상 증자 등의 이벤트 반영)되는 경우에 추가적인 확인 절차(예 : 상급자 승인절차) 등 오류방지를 위한 통제장치를 갖추었는지 - 증빙자료 : 수기거래 입력시 상급자 승인내역 등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도가능잔고 및 외부 대차정보 등 무차입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산출하여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는지 - 증빙자료 : NSDS 자료 전송 내역 등 	
18	샘플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매도 거래 샘플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지 - 증빙자료 : 거래 주문 제출 시간 전·후 잔고, 대차거래 정보 등 	

※ 각 항목별 증빙자료는 예시이므로 각 위탁자별 상황에 맞게 징구하여 점검 및 보관 필요

